# KAIST 극초단초정밀광기술연구단
#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
## 1 모집분야 및 인원

| 직종 | 직명 | 모집분야 | 모집구분 | 인원 |
|---|---|---|---|---|
| 연구직 | 위촉연구원 | 광학, 양자 | 무관 | 1 |

※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## 2 모집분야 세부내용

□ 연구직 [위촉연구원]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모집분야** | 광학, 양자 | **직종** | 연구직 | **직명** | 위촉연구원 |
| **고용형태** | 기간제 | **근무형태** | 전일제<br>(주5일, 40시간) | **근무지** | 본원 |
| **모집구분** | 무관 | **급여수준**<br>(세전 기준) | 36,000,000원/년 (총액연봉/세전 기준) | | |
| **채용인원** | 1명 | **계약기간** | 2026.12.28.~2027.02.28. | | |
| **지원자격** | ・임용일 기준 관련분야(기계공학, 물리학, 광학, 레이저공학, 전자공학)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<br>・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함 | | | | |
| **직무내용** | ・차세대 양자 컴퓨팅, 양자 통신 및 초정밀 측정을 위한 레이저 개발, 광자 생성, 광자전송 및 해석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/개발<br>・관련 국가/산업 프로젝트 운영, 실험/설계, 논문/제안서/보고서 작성 | | | | |
| **연구실 정보** | 연구책임자 | 기계공학과 극초단초정밀광기술연구단 김영진 교수 | | | |
| | 홈페이지 주소 | http://upm2.kaist.ac.kr | | | |

※자세한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(별첨) 참고

## 3 공통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공통<br>지원자격 | - KAIST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<br>-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<br>- 지원한 모집분야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며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|
| 결격사유 |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<br>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|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| -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<br>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<br>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<br>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<br>- 2019.9.1.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br>·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<br>·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잇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(단, 체류자격이 영주(F-5)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br>·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<br>·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<br>·연수연구원 또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써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|
| 우대사항 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<br>: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(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)<br>※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별도로 적용하되, 우대점수의 총합은 만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 |

## 4 지원방법 및 기간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**지원방법** | 본 공고와 함께 게시된 지정양식을 작성 및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<br>- 접수 이메일: shinerkim82@kaist.ac.kr<br>-이메일 제목 : 위촉연구원 지원_OOO<br>※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. |
| **접수기간** | **- 2026. 11. 24.(화) 00:00 ~ 2026. 12. 07(월) 18:00**<br>- 마감 시각 임박 시 채용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 |

# 5 채용일정 및 합격자 처리기준

## 가. 채용전형 일정

| 구분 | 평가방식 | 합격배수<br>(예비합격배수) | 일정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**서류전형** |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| 3배수<br>(2배수) | '26. 12월<br>초순 | 내부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이 생략될 수 있음 |
| **면접전형** | 지원자 개별면접(온라인 화상면접 예정) | 1배수<br>(2배수) | '26. 12월<br>중순 | 온라인/<br>10페이지 PPT발표 |
| **결격사유 검증** | 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<br>-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| - | '26. 12월<br>중순 | - |
| **임용** | 신규임용 | - | 26.12.28(예정) | - |

※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이나 공고의 취소 가능성이 있음.

## 나. 합격자 처리기준

| 구분 | 처리기준 |
|---|---|
| **우대사항** | -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* |
| **합격자 처리기준** | - 평가위원 평균점수(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에 가점 및 자격점수를 포함하여 서류전형은 50점 이상, 면접전형은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배수에 맞게 선정 |
| **동점자 처리기준** | **(서류전형)** 관련 규정에 따라 최하위 합격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다음 단계의 전형 응시 기회 부여<br>**(면접전형)**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, ②장애인, ③지역인재, ④이전 전형 고득점자, ⑤면접전형의 평가위원 평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 |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7 결격사유 검증

○ **(제출대상자)** 면접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

○ **(제출방법)**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
○ **(확인내용)**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결격사유

해당 여부

○ **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**
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- 지원자격,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험·경력사항,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 | - 발급기관 서식<br>-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,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제출 |
| -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| -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제출 요청 |
| -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<br>(장애인증명서,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) | -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 |
| -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| |

※(필수)지원서 작성 시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항만 기재함. 증빙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.

○ **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**

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|---|
| 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<br>- 개인신용정보조회서<br>-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<br>- 병적증명서(해당자)<br>- 성범죄경력조회서 | - 발급기관 서식<br>(단,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) |

○ **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**

○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자료만 인정하며, 컴퓨터 캡쳐화면 등 비공식적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.

○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.

○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## 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

○ **이의신청**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운영목적 | -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|

| | |
|---|---|
| 신청기간 | 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익일 자정까지<br>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|
| 신청방법 | -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<br>-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(shinerkim82@kaist.ac.kr)에게 제출 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 |
| 처리대상 | 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<br>(※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.) |

○ **채용서류 반환신청**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청구기간 | -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 |
| 신청방법 | - 채용담당자에게(shinerkim82@kaist.ac.kr) 별도 신청 |
| 반환대상 | - 채용서류(기초심사자료, 입증자료, 심층심사자료 등) |
| 반환제외대상 | -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<br>-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 |

# 8 유의사항

## □ KAIST 별정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

○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, **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**해야 하며,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.

○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,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.
(단, 결격사유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도 채용 가능)

## □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

○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, 누락,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,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.

○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,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.
※ 기관 명칭 오기,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, 비속어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

○ **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**

**하며,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, 합격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**

-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

**[ 제출서류 목록 ]**

| | |
|---|---|
| **지원자격** | 학력증명서,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류 |
| **교육사항** | 성적증명서, 수료증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 |
| **경력사항** | 다음의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.<br>-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<br>- 4대보험[1]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<br>(※프리랜서, 해외경력 등 상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, 별도로 제출서류를 정함) |
| **기타활동** |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|
| **자격사항** | 자격증 증명서 |
| **우대사항**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제출처:KAIST 또는 한국과학기술원), 장애인증명서 |
| **기타** | 기타 관련 서류 |

1)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이 포함된 가입증명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보험 확인서),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 중 1개의 확인서 제출

※ 증빙서류는 기관에서 발급한 공적인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(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등은 불인정), 진위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**(미제출 시)**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

  ※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

- **(기재오류)**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, 내부절차를 거쳐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
## □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

○ **모든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기재** (예: OO대학교)

※ 다만, 경력 관련 학교인 경우 '경력사항'에만 기재 가능

○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, **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편견 유발 항목을 직·간접적으로 기재 시 감점 처리함.**

- **(편견유발항목)** 이름(자기소개서), 출신지역, 출신학교(학력), 가족관계, 성별, 연령, 신체조건, 재산 등

| 항목 | 예시 |
|---|---|
| 출신 학교 | (예시1)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~<br>→ 출신학교명을 직접적으로 기재하였음.<br>(예시2) 가오리라는 수영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~<br>→ 가오리가 KAIST 동아리라는 것을 아는 평가위원은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감점 처리 |
| 출신 지역 | (예시)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에서만 자라왔으며~ → 출신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기재함. |
| 가족 관계 | (예시1) KAIST 교수이신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며~<br>(예시2) 부모님 모두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~<br>→ 가족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재함. |
| 성별 | (예시1) 군복무를 현역(운전병, 군수병, 전경, 의경 등)으로 의무복무를 하였으며~<br>→ 병사로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는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<br>(예시2)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~<br>→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것은 남자이므로 성별 유추 가능<br>(예시3)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며~<br>→ 성별을 직접적으로 기재함. |
| 연령 | (예시1)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~<br>(예시2) 저는 소띠라서 소처럼 우직한 성격으로 ~<br>→ 연령을 직접적·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기재함. |

○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의 기본 인적사항(이름, 전화번호, 이메일 등) 및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(증빙서류 검토과정 중 부득이하게 알게 된 정보 포함)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.

※ 학위취득기관(출신학교)명, 출신연구실 및 지도교수명, 논문의 교신·공동저자명 정보는 기재 가능하며, 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해 전형에 활용 예정.

## □ 부정행위 관련 사항

### ○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

**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관련**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,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.

1.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2.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
3.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
4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
5. 청탁・압력・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

6. 부정합격자*

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
### ○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・채용취소

**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*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* 공직유관단체 포함

## □ 기타사항

○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.

○ 채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.
※ 단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,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.

○ 채용확정자(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)의 채용취소, 임용불응,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(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)를 선정할 수 있으며,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.

○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*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.
*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・외가 4촌 이내

○ 채용담당자: 채용담당자 연락처(shinerkim82@kaist.ac.kr, 042-350-5017)

○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: KAIST 채용노무팀(recruit@kaist.ac.kr)